

# 가족급여 제한적 허용 관련 예상질의 답변(보완)

<'24.11.15,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>

## <미연계 관련>

Q1

**미연계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?**

☞ (신규 신청자)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전 결제 이력이 없다면 미연계로 간주 됩니다.

☞ 미연계 사유서 제출 불필요

다만, 부정수급 등으로 활동지원급여가 중단·제한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결제 이력 등은 신청 후 시군구에서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합니다.

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는 복수의 활동지원기관에 연계를 요청한 시점부터 60일 이상 연계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미연계 사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 ☞ 미연계 사유서 제출 필요

(코로나19 한시적 가족급여 이용자) 가족급여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매월 연계 요청 하였던 내용을 미연계 사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 ☞ 미연계 사유서 제출 필요

Q2

**활동지원기관(센터) 한 곳에서만 미연계 60일 이상 충족하면 되나요?**

☞ 아닙니다.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2곳 이상의 활동지원기관 2곳 이상의 활동지원기관에서 60일 이상 연계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.

※ 시·군·구 내 활동지원기관이 한 곳인 경우 예외

**Q3**

**미연계 사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?**

☞ 등록된 활동지원기관(센터)에 작성 요청하시면 됩니다.

※ 활동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미연계 사유서 작성을 거부할 수 없음

**Q4**

**한 번 신청하면 가족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?**

☞ 아닙니다. 매달 등록된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사 연계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다음 달부터 가족급여 이용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.

**Q5**

**매월 활동지원사 연계 요청을 하지 않거나, 부적절한 미연계 요청 또는 고의로 미연계를 유도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?**

☞ 다음 달부터 가족급여 이용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.

**Q6**

**부적절한 미연계, 고의로 미연계를 유도하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하나요?**

- ☞ ① 활동지원사 연계가 안 될 것이라고 짐작하여 활동지원기관에 연계 요청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  
(예; 활동지원기관(센터)에서 어차피 신청을 해도 연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,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하여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)
- ②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범위 밖의 내용(그 가족을 위한 활동보조 등(장애인활동법 제16조제2항)), 또는 의료행위 등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내용을 요청하는 경우
- ③ 서비스 내용과 무관하게 특정한 성별, 연령대의 활동지원사 연계 요청을 하는 경우  
(예; 함께 있는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 요청, 수급자가 체격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30대 이하의 남성 요청 등)

- ④ 합리적이지 않은 시간대에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 
(예 : 이른 아침 시간만 요청, 늦은 밤시간만 요청, 요청 시간을 짧게 징검다리만으로 요청(예: 09:00~10:00, 12:00~13:00, 18:00~19:00) 등)
- ⑤ 활동지원사는 서비스 제공 의사가 있으나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
- ⑥ 그 밖에 시·군·구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연계 사유가 부적절하거나 고의로 활동지원사를 미연계\*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

\* 활동지원기관이 연계를 위해 연락을 하거나 일정을 조율할 때 연락 자체가 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,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을 계속해서 미루는 경우

위 경우는 적절한 미연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족급여 수급자도 위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익월부터 가족급여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.

**<신청 관련>**

**Q7      진단서 상에 지능지수, GAS 척도가 점수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(예 : 측정불가, 40점 미만으로 추정)**

☞ 지능지수, GAS 척도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진단서를 새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.  
(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결정서로는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.)

**Q8      지능지수, GAS 척도 중 하나만 기준을 충족하면 되나요?**

☞ 네.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관계없이 지능지수 35점 이하, GAS 척도 30점 이하이면 됩니다.  
(지적장애도 GAS 척도로 증빙 가능, 자폐성 장애도 지능지수도 증빙 가능)

Q9

**희귀질환자임을 어떻게 증빙하나요?**

☞ ①“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(nhis.or.kr) 접속 ☞ 개인민원 ☞ 보험급여 ☞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”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, 조회 화면을 캡처해서 제출, 또는 ②“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(helpline.kdca.go.kr) 홈페이지 접속 ☞ 희귀질환정보 ☞ 희귀질환에 해당하는지 확인”하시고 해당하면 진단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
가족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희귀질환자이면서 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\*에 해당하여야 합니다. 가산급여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신청시 읍면동에서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합니다.

※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(X1) 영역 합산점수 성인 426점 이상, 아동 327점 이상

**<심사 관련>**

Q10

**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심의하나요?**

☞ 활동지원사 미연계 사유서를 통해 미연계 기간, 복수의 활동지원 기관에 연계 요청 내역, 미연계 사유를 중점적으로 심의합니다.

**<활동지원사 관련>**

Q11

**내 가족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나요?**

☞ 가능합니다. 선임 활동지원사와 함께 현장실습을 진행하면 됩니다.

**Q12**

**활동지원기관에 가족 활동지원사 등록은 언제해야 하나요?**

☞ 가족급여 신청 전에 활동지원사로서 활동지원기관(센터)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.

2024년 11월 가족급여 신청자는 2024년 11월 30일까지 활동지원사 교육을 수료하면 되지만, 활동지원기관(센터)와 협의하여 활동 지원사로서 등록은 가족급여 신청 전에 하셔야 합니다.

**Q13**

**가족 활동지원사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?**

☞ 가족 활동지원사도 타 활동지원사와 마찬가지로 등록된 활동지원 기관의 보수교육 일정에 맞춰 1년에 최소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
불가피한 사유\*로 인해 보수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총 교육 시간의 최소 2/3 이상의 보수교육은 이수하여야 합니다.

불가피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 이수를 하지 않을 경우 가족급여 이용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.

\* (불가피한 사유) 민법 제779조(가족의 범위),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가족의 범위(수급자 기준)에 해당하는 가족의 경조사, 가족 활동지원사의 입원 등 사유가 보수교육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

**Q14**

**가족 활동지원사가 수급자를 돌보기 위해 또는 직장생활로 대면·수시보고, 보수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나요?**

☞ 가족 활동지원사도 다른 활동지원사와 동일하게 대면보고, 수시 보고, 보수교육 참석, 실시간 결제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활동지원사의 의무 준수를 할 수 없는 경우 가능한 가족으로 제공자 변경신청 하여야 합니다.

## <서비스 이용 관련>

Q15

**원하는 활동지원기관(센터)에 등록하고 이용해도 되나요?**

☞ 아닙니다. 가족급여 이용 시 주기적으로 활동지원사 연계 신청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므로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활동지원기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.

Q16

**가족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소득으로 인정되나요?**

☞ 네. 소득으로 인정됩니다. 기초생활수급 탈락 등을 고려하여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.

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은 활동지원사의 연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예외적인 제도입니다. 앞으로도 활동지원사 매칭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에 도움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